

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 규정관리 규정

제정 2019. 9. 9.
명칭변경 2020. 6. 30.
개정 2024. 7. 29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의 정관에서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제 규정(세칙포함)의 제정과 개정·폐지·시행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규정 등의 제정에 관하여는 법령, 정관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“규정”이라 함은 정관에서 위임된 제반 사무 수행 등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절차에 관하여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것을 말한다.
- ② “규칙”이라 함은 제 규정 시행에 따른 세부절차 및 규정 이외의 법인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기준,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- ③ <삭제> (개정 2024.7.25.)

제4조 (규정화) 재단의 소관 업무 수행상의 제반 절차 및 표준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한 명문화하여 업무집행의 능률 및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 (효력의 순위) ① 규정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.

②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.(일부개정 2024.7.25.)

③ 동일 순위의 규정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에 우선하며, 동일 특별규정과 일반규정 간에는 신규정이 구규정에 우선한다.

제6조 (제정 및 개폐권자) 규정 등의 제정·개폐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이사회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행한다.
- 2.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상임이사가 행한다.(일부개정 2024.7.25.)

제7조 (제정절차) ①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는 이사장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 상정,

이사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.

② 규칙의 제정·개폐는 상임이사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 (일부개정 2024.7.29.)

③ 제 규정 및 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
1. 규정 등의 명칭
2. 제정·개정 또는 폐지 취지
3. 제정·개정 요지
4. 제정·개정 또는 폐지(안)
5. 신·구조문 대비표 (부분 개정시)
6. 부칙 등 기타 참고사항

제8조 (제 규정 등의 편성) ① 제 규정 등은 간단·명료하여야 한다.

② 제 규정 등은 규정하는 사항의 내용에 따라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다. 다만, 요령은 조문 형식에 의하지 않고 설명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9.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24.7.2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